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4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현행 규정상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을 건축허가(승인) 신청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미술장식 설치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없이 형식적인 심의신청을 하여 요건불비등으로 보완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,
- 동 심의신청 기한을 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로 연장하여 심의 신청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 및 심의기관(위원회) 상호간에 불필요한 인력(행정력) 낭비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서 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로 변경함 (안 제3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2. 2. 28 ~ 3. 9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타시군 미술장식심의신청서 제출시기 규정현황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”를 “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체육담당관실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술담당 박영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종일 (행정 2068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미술장식의 설치)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주는 <u>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</u>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수급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제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미술장식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.</p>	<p>제3조 (미술장식의 설치) -----</p> <p>----- <u>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타시군 미술장식심의신청서 제출시기 규정현황

구 분	심의신청서 제출시기	비 고
안산시	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	
수원시	건축계획 심의신청시	
안양시	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	
시흥시	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6개월이내	
부천시	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	
군포시	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	
의정부	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	
과천시	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	
성남시	준공예정일 180일 전까지	
용인시	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	